

주요심결사례

2002. 1. 29. 심결

사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부산빙과거래정상화협의회의 경쟁제한행위 등에 대한 건 (2001부사2263)</p>	<p>부산빙과거래정상화협의회는 2000. 11월경 "신규거래선 개척 및 유통거래선에 관한 건, 탈취 거래선 원복사항에 관한 건, 비메이커 근절에 관한 건"이라는 동일 제하의 2건의 문서를 작성하여 회원 및 빙과 제조사에 배포하였고,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각 대리점이 임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발생 상황일지"를 작성, 회원사 및 빙과 제조사로 하여금 신규거래처가 발견될 경우 이를 자신에게 제보하도록 하고, 제보자에 대하여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각 대리점이 신규거래처와 거래하기 위하여 개별접촉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였고, 타 거래처를 빼앗은 대리점(또는 제조사)에 대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종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매운동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회원 및 제조사로 하여금 비조직에 대해 제품공급을 중단토록 하고 대형 할인점 등에 대해 과도하게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거래처에 대하여 기득권을 인정하고 거래처 침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쟁제한행위와 관련한 결의내용을 자신의 의결기구를 통하여 파기토록 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과징금 납부 : 1,100,000원
<p>(주)한국인삼공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2001전사4681)</p>	<p>(주)한국인삼공사는 자기의 홍삼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홍삼류 전시판매장 운영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홍삼제품 가격을 자신이 정하는 소비자판매가격으로 할 것과, 동 판매가격을 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을 얻도록 하고, 약정조항 위반 때 자신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과도한 가격할인 등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판매장려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는 등의 재판매가격유지조항을 설정하였고, 기존 판매점들이 다른 전시판매장 및 인근 할인점과의 지속적인 할인경쟁으로 인하여 가격통제력이 상실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 홍삼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조치하는 등 개별사업자에게 소비자판매가격을 미리 지정하여 주고, 지정한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 위반</p>	



개 시 판

본 협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매뉴얼) 열람 실시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준수편람(매뉴얼)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으로 미국 GE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에 관한 가이드, 일본 NEC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람, 미국 변호사협회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매뉴얼(Allied Signal Inc, Amoco, The BFGoodrich, Chevron, Columbia/Health Care, The Dow Chemical, General Electric, General Motors, Hagan & Hortson, IBM, IIT, Mobil, Owens-Illinois, Pfizer, The Quaker Oats, Rohm and Haas, Scientific-Atlanta Inc, TRINOVA, United Technologies, Dupont 등),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한국통신, 포항종합제철, 동양제철화학,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화재해상보험, LG화재해상보험, LG가스 등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과 LG그룹의 공정거래법 업무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회원사에서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작성

본 협회에서는 각 회원사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 편람을 업종에 맞게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작성 계획이 있으신 각 회원사는 상담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75-8870~2 / FAX (02)775~8873